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991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이주희 · 최민희 · 임미애
김우영 · 용혜인 · 이광희
이훈기 · 김기표 · 한민수
박민규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

매입거래를 통하여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p> <p>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u>40일</u>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1. ~ 3. (생략)</p> <p>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u>60일</u>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④ (생략)</p>	<p>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p> <p>① ----- ----- ----- -----<u>15일</u>----- ----- ----- -----<u>.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u>20일</u>----- ----- ----- -----<u>.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